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개정 2014.10.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식품영양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학과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식품학특론, 영양학특론, 생화학특론 이수하여야 하며 임상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임상영양사교육기관 지정신청 서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논문지도위원회(박사학위과정만 해당)

①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1. 본 학과의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2.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균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모든 과목을 재 응시한다.

3. 출제위원은 각 과목별 전임(겸임)교수 혹은 시간강사로 한다. 채점위원은 출제위원과 동일하나, 채점위원이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가 별도로 지정한다.

4. 논문제출자격시험관련 자료는 5년간 자체 보관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OEIC 650점 이상(입학전은 600점 이상으로 하되 입학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9.30.)
2. 본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 60시간 이상 이수(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외국인의 경우 위의 1,2호 또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13.9.30.)

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1. 박사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신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되어야 한다.

- ① 주저자로 SCI 1편 이상(accept or On-line publish 까지 인정함.)
- ② 주저자로 국내전문학술지 2편 이상(별쇄본제출로 인정함)
2. 석사학위과정은 주저자로 국내전문학술지에 지도교수가 포함된 1편 이상의 논문 게재('accept' 까지 인정함.)
3.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인쇄본(=인준본) 제출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0)

제7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9.30.)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별표 1]

자격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각 전공별로 3과목을 시행한다. 식품학과 영양학 전공은 식품학특론, 영양학특론, 생화학특론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임상영양학 전공은 고급영양이론, 임상영양치료,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을 시험과목으로 한다.	각 전공별(영양학, 식품학)로 4과목을 시행한다.